

미국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에 관한 연구

변호사 吳澤林

논문요약

최근 미국에서는 DOJ나 SEC가 FCPA를 매우 공격적으로 의율하여 큰 화제가 되고 있다. 1977년에 제정된 FCPA는 그 동안 별로 주목 받지 못하다가 불과 몇 년 전부터 사건 수도 급증하였고, 징벌금의 액수도 폭등하였다. 더구나 대상 기업의 상당수가 외국 기업이어서 전 세계적으로 FCPA가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다. 특히 우리 기업도 FCPA에 노출될 위험이 상당한 만큼 FCPA에 대한 연구는 시급한 과제일 뿐만 아니라 그 의미도 비교법적 연구를 뛰어 넘는 직접적인 실익이 있다.

우선 FCPA의 제정 과정 및 1, 2차 개정 내용을 살펴보았다. Watergate Scandal로 촉발된 FCPA는 결국 OECD 부패방지협약의 체결로 이어져 다른 국가들에게까지 큰 영향을 미쳤다. 그 과정에서 FCPA 스스로도 관할 및 적용대상의 확장 등을 통해 현재의 공격적인 의율이 가능할 수 있도록 토대를 닦았다. 1998년 이후 더 이상 개정은 없었음에도 최근 몇 년 사이에 법집행 방식의 변화가 사실상 법의 실질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나아가 업계의 지각변동을 야기한 셈이다. 최신 논문, 자료 등을 통해 사건 수, 징벌금 액수, 외국 기업 적용례 등을 상세히 소개하였다.

다음으로 FCPA의 반부패 규정과 회계 규정을 설명하였다. 우선 반부패 규정과 관련하여는 가장 관건이 되는 적용대상자에 대해 조문에 따라 issuer, domestic concern, foreign non-resident로 구분하여 자세히 살펴보았다. 특히 각 대상자 별로 지역관할과 국적관할이 발동되기 위한 요건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그 후 공통되는 구성요건 내용에 관해 차례로 설명하였다. 특히 중개인을 통한 간접적인 뇌물제공, 정부대행기관의 범위 등 미국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히 소개하였다.

또한 예외와 적극적 항변사유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최근 이를 좁게 해석하는 추세나 OECD 부패방지협약과의 비교 등도 곁들였다.

회계 규정에 대해서도 최대한 자세히 소개하였다. 반부패 규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회계 규정이지만 실질은 오히려 반부패 규정보다 더 엄격한 내용과 벌칙 조항을 갖고 있음을 소개 하였다. 특히 기록유지 의무와 내부통제수립 의무의 내용과 의미, 이를 충족하기 위해 요구되는 수준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우리 법과 미국의 FCPA와의 비교 검토를 시도하였다. 회계 규정의 존부, 적용대상자 범위, 외국공무원에 대한 해석, 각 법이 인정하는 예외나 항변 사유의 비교 등을 필자 나름대로 시도하였다. 향후 우리 법의 해석이나 개정 논의와 관련하여 FCPA가 상당한 참고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끝으로 FCPA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최근 FCPA에 대한 미국 사법당국의 공격적인 의율에 대해 미국에서조차 비난이 많이 있지만, 우리 국민이나 기업까지 타깃이 될 수 있는 현실에서 일단 FCPA에 대한 정확한 소개 및 올바른 이해는 시급한 과제이다. 더구나 자금의 흐름과 기업활동의 범위에서 더 이상 국경의 의미가 없어진 현실을 감안할 때 반부패 분야의 세계적인 공동 대응 추세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 역시 매우 절실함을 강조하였다.

[주제어] 반부패, 해외부패방지법, 부패방지협약, 외국공무원, 뇌물, 국제상거래 FCPA, corruption, bribery, OECD Anti-bribery Convention, foreign official, issuer, domestic concern, books and records, internal controls, accounting provision

* 논문접수 : 2012. 4. 6. * 심사개시 : 2012. 4. 9. * 게재확정 : 2012. 5. 3.

目 次

- | | |
|----------------------|---------------|
| I. 연구의 목적 | 2. 기록유지 의무 |
| II. FCPA의 연혁 및 최근 동향 | 3. 내부통제 수립 의무 |
| 1. 연 혁 | V. 우리 법과의 비교 |
| 2. 최근 동향 | 1. 회계 규정 존부 |
| III. 반부패 규정 | 2. 적용 대상자 |
| 1. 개 요 | 3. 외국공무원 |
| 2. 구성요건 | 4. 직간접적으로 |

I. 연구의 목적

최근 미국 연방검찰이 가장 역점을 두고 수사하는 분야가 바로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이하 FCPA라 한다) 위반이다. 우리에게 아직 생소하지만 이 법은 1977년에 제정되었으니 이미 35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법이기도 하다. 하지만 미국에서도 이 법에 근거한 수사나 기소가 활발해진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최근 5년 동안에 문제된 FCPA 사건이 그 전 30년 동안에 문제된 사건 보다 훨씬 많다고 한다.¹⁾ 최근 미국 연방검찰과 SEC가 매우 적극적이고 공

1) 최근 미국의 FCPA 관련 동향에 대해서는 Amy Deen Westbrook, "ENTHUSIASTIC ENFORCEMENT, INFORMAL LEGISLATION: THE UNRULY EXPANSION OF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Georgia Law Review(Winter, 2011), p. 492 이하; Mike Koehler, "BIG, BOLD, AND BIZARRE: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ENTERS A NEW ERA", University of Toledo Law Review(Fall, 2011), p. 99 이하; Jon Jordan, "RECENT DEVELOPMENTS IN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AND THE NEW UK BRIBERY ACT: A GLOBAL TREND TOWARDS GREATER ACCOUNTABILITY IN THE PREVENTION OF FOREIGN BRIBERY", NYU Journal of Law & Business(Spring, 2011), p. 853 이하; Lauren Giudice, "REGULATING CORRUPTION: ANALYZING UNCERTAINTY IN CURRENT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ENFORCEMENT", Boston University Law Review(January, 2011), p. 348 이하; Roger M. Witten, Kimberly A. Parker, Jay

격적으로 FCPA 수사를 벌이는 사실은 미국 내에서도 굉장한 이목을 끌고 있으며, 학계뿐만 아니라 실무자들 사이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미국 FCPA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비교법적 차원에서도 그 자체로 의미있는 연구이겠지만 다음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비교법적 차원을 뛰어넘는 직접적인 실익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부지불식간에 우리 기업이나 국민이 직접 미국 FCPA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 미국의 동향에 대해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미국 사법당국의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FCPA 의율이 외국인 혹은 외국기업의 미국 영역 밖에서의 행위에 대해서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외국기업이라고 하더라도 ADR(American Depositary Receipts)이 유통되는 기업의 경우 issuer에 해당하여 FCPA상 반부패 규정과 회계 규정을 모두 적용받게 되어 있다. 또한 issuer에 해당하지 않은 외국 기업 혹은 미국에 거주하지 않은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 행위에 미국의 통신망, 은행전산망 등이 조금이라도 이용되었다면 FCPA의 적용을 피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렇듯 부지불식간에 미국 국적이 아닌 사람이나 기업이 미국 사법당국의 수사대상이 되거나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최근 수사 대상이 되어 거액의 징벌금²⁾을 낸 기업들 중 상당 부분이 외국 기업이라고 한다.³⁾ 아

Holtmeier, Thomas J. Koffer, "PRESCRIPTIONS FOR COMPLIANCE WITH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IDENTIFYING BRIBERY RISKS AND IMPLEMENTING ANTI-BRIBERY CONTROLS IN PHARMACEUTICAL AND LIFE SCIENCES COMPANIES", Business Lawyer(May, 2009), p. 691 이하 참조.

2) 형사 벌금(fine), 민사 과징금(penalty), 이익환수금(disgorgement) 등을 합한 개념이다.

직 국내기업이 직접 수사대상이 된 적은 없지만 미국 상장사의 한국 자회사가 수사대상이 된 사례는 벌써 발생하고 있다.⁴⁾ 이러한 추세로 인해 ADR이 유통되는 국내기업이나 미국 상장사의 한국 자회사의 경우에는 FCPA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미국 DOJ와 SEC의 수사 동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미국 FCPA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단순히 비교법적 관심을 뛰어 넘어 우리 기업과 국민의 이해관계에 직결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둘째, FCPA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국내법 해석에도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다. 사실 FCPA는 국내법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바로 OECD 부패방지협약⁵⁾에 따라 제정된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이하 국제뇌물방지법⁶⁾)이라 한다)이 FCPA의 영향을 받은 국내법이다.⁷⁾ 이 법은 1997년 체결된 OECD

3) 현재 징벌금 액수 상위 10개 기업 중에 무려 9개가 외국기업이다. The FCPA Blog(www.fcpablog.com) 참조.

4) CCI Korea 사건이나 SSI Korea 사건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SSI Korea 사건에 대한 소개는 Robert C. Blume, J. Taylor McConkie. “NAVIGATING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THE INCREASING COST OF OVERSEAS BRIBERY”, Colorado Lawyer(August, 2007), p. 97 참조.

5) 동 협약에 대한 정확한 영문제목은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s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이다.

6) 통상 domestic bribery에 대항하는 표현으로 foreign bribery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기존 자료 중에는 동법의 약칭을 ‘국제상거래뇌물방지법’으로 명명한 것이 있다. 예컨대, 법무부·전국경제인연합회, “문답식 국제상거래 뇌물방지법 해설”, (1999. 2) 참조. 그러나 이는 자칫 사적 영역의 뇌물만을 칭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 bribery를 official bribery와 private commercial bribery로 구분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7) 동법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은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외국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국제상거래 질서의 확

부패방지협약의 국내법적 이행을 위해 1998년에 제정되는데, OECD 부패방지협약의 태동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법이 바로 FCPA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 때까지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OECD 회원국도 미국의 FCPA와 같은 국내법을 갖고 있는 나라가 없었는데, 미국의 강력한 드라이브로 인해 결국 1997년에 OECD 부패방지협약이 체결되었다.⁸⁾ 그리고 이런 움직임은 결국 38개국에서 동 협약을 국내법으로 입법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한걸음 더 나아가 영국에서는 2010년 매우 강력한 반부패법(UK Bribery Act)⁹⁾을 제정하기에 이르는 등 전 세계적인 반부패법 제정이 가속화 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국제뇌물방지법 적용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수사 사례 및 판결이 나오고 있다. 중국항공사 한국지사장에 대한 뇌물제공 사건으로 중국항공사의 한국지사장을 국제뇌물방지법 제2조상의 ‘외국공무원 등’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고, 실제 최근에 나온 1심 판결문에서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동법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¹⁰⁾ 그런데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미국 FCPA를 둘러싼 여러 쟁점들 중에 외국공무원의 범위와 관련된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으며, 그 중에는 우리 법의

립에 기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행위 방지를 위한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적고 있다.

- 8) OECD 부패방지협약의 체결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부패방지위원회, “반부패 국제협약 자료집”, (2003. 12.), p. 67이하; 법무부·전국경제인연합회, 앞의 책, p. 4이하 참조.
- 9) Eric Engle, “I GET BY WITH A LITTLE HELP FROM MY FRIENDS? UNDERSTANDING THE U.K. ANTI-BRIBERY STATUTE, BY REFERENCE TO THE OECD CONVENTION AND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International Lawyer*(Winter 2010), p. 1173이하.
- 10) 인천지방법원 2012. 2. 14. 선고 2011고합277, 294, 757 판결 참조.

해석이나 실무 운용에 참고할만한 내용도 상당하다.

셋째, 미국의 FCPA나 우리의 국제뇌물방지법 모두 각국 사법당국의 긴밀한 사법공조를 요하는 분야인바, 향후 형사법 분야에서도 국경을 뛰어 넘는 공조수사가 활발해지고, 결과적으로는 지역성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는 형사법 분야에서조차 국제적 통일규범 형성의 단초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국제뇌물 사건의 경우 관할이 여러 나라에 걸쳐 있을 가능성이 많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사법공조나 범죄인인도 등이 필연적으로 수반될 가능성이 농후하다.¹¹⁾ 또한 미국의 FCPA나 우리의 국제뇌물방지법 모두 뇌물 제공자 측만을 처벌할 수 있고 뇌물을 수수한 외국공무원은 그 공무원이 속한 국가에서 국내법으로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¹²⁾ 각국의 사법당국이 서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공유하는 경우도 쉽게 상정할 수 있다. 실제 국내의 경우만 보더라도 한국 검찰의 수사가 미국 SEC의 수사로 이어진 경우¹³⁾도 있었으며, 역으로 미국 검찰의 수사가 한국 검찰의 수

11) 대표적인 예가 Halliburton/TSKJ 사건이다. 맨 처음 정보를 입수한 프랑스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면서 미국의 DOJ와 SEC에게 알려주었고, 결국 뇌물 발생지인 나이지리아 당국의 수사로까지 이어졌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Barbara Crutchfield George & Kathleen A. Lacey, "INVESTIGATION OF HALLIBURTON CO./TSKJ'S NIGERIAN BUSINESS PRACTICES: MODEL FOR ANALYSIS OF THE CURRENT ANTI-CORRUPTION ENVIRONMENT ON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ENFORCEMENT",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Winter, 2006), p. 503 이하 참조.

12) 최근 미국에서는 뇌물을 수수한 외국공무원을 FCPA가 아닌 자금세탁방지법(18 U.S.C. §1956)으로 의율한 사례가 있다고 한다. *US v. Juthamas Siriwan*, US District Court of the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Case No: CR 09 00081) 공소장 참조.

13) IBM Korea, LG-IBM의 납품 비리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의 수사(2004. 1. 2.자 보도자료 참조) 직후, 미국 SEC가 IBM을 FCPA 위반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예컨

사로 이어진 경우¹⁴⁾도 있었다.¹⁵⁾ 사실 돈의 흐름에는 국경이 없어진 지 오래되었고, 기업들도 전 세계를 무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부패방지라는 대의명분 하에 각국의 사법당국이 서로 긴밀히 공조하거나 자국 관할의 역외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시도를 서로 용인하는 추세가 이상한 것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그 동안 FCPA에 대한 연구가 국내 학계나 실무계에서는 별로 없었다는 점은 다소 의외라고 느껴질 정도이다.¹⁶⁾ 이하에서는 일단 FCPA의 연혁 및 최근 동향을 알아보고, 반부패 규정과 회계 규정에 대한 충실한 소개 및 우리 국제뇌물방지법과의 비교 분석을 해 보고자 한다.

II. FCPA의 연혁 및 최근 동향

1. 연혁

가. 1977년 제정

대, The Boston Globe의 2004. 1. 9.자 기사 “SEC plans civil suit against IBM over accounting transaction” 참조.

- 14) CCI Korea 사건이 대표적이다. 2009년 1월경 미 법무부의 CCI에 대한 수사가 알려지면서 CCI Korea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의 수사로 이어졌다. 예컨대, 뉴시스 2009. 4. 10.자 기사 “검찰, 미업체 돈 받은 전 한수원 간부 기소” 참조
- 15) 실제로 양국 사법당국이 정보를 교환했는지 확인할 길은 없으나 요즘처럼 국제적으로 기사 검색이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시대에서는 다른 나라의 수사 관련 기사를 자국의 수사 단서로 활용할 수 있는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 16) 이에 관해 최근에 나온 논문으로는 오규진, “OECD 뇌물방지협약과 한국의 국내법적 수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2011); 윤충원, “미국 FCPA 반뇌물규정과 미국기업의 실무적 대응”, 무역학회지(제36권 제2호), (2011. 4.)

원래 미국의 FCPA는 Watergate scandal 수사의 부산물로 제정되었다.¹⁷⁾ Watergate 수사 중에 닉슨 대통령의 선거캠페인 과정에서 미국기업으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사실뿐만 아니라 그 후원금이 해외에서 세탁되었거나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로 제공된 사실 등도 밝혀졌다. 결국 SEC¹⁸⁾가 미국 기업들의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을 수사하게 되었고, 3년간의 수사 끝에 400개가 넘는 미국 기업 (Fortune 500안에 들어 있는 기업 중에 177개도 포함된다)에 의해 3억불 이상의 뇌물이 다양한 나라의 외국공무원들에게 제공된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¹⁹⁾ 당시 수사 결과에 대한 놀라움은 미의회로 하여금 해외에서의 뇌물 역시 비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나쁜 비즈니스라는 광범위한 합의를 형성하게 하였다.²⁰⁾ 즉 해외 뇌물은 비효율적인 기업이 사업권을 딸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해당국에서의 미국 비즈니스를 위협에 빠뜨릴 수도 있고, 미국에 불리한 외교 문제를 야기할

17) 자세한 제정 배경은 Peter W. Schroth, "THE UNITED STATES AND THE INTERNATIONAL BRIBERY CONVENTIONS",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Fall, 2002), p. 593 이하 참조.

18) FCPA 집행에 대한 SEC의 역할과 지위에 대해서는 Paul V. Gerlach, "THE SEC'S ENFORCEMENT OF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American Bar Association Center for Continuing Legal Education National Institute(March 21-22, 2002) 참조

19) 이 중 가장 유명한 사례가 바로 록히드사의 일본 다나카 수상에 대한 항공기 구입 관련 뇌물 제공 사건이다. 또한 SEC 수사로 밝혀진 내용 중에는 한국 정치인에 대한 뇌물도 있었다. 즉, Gulf Oil이란 회사가 당시 한국의 집권당에 4백만불을 주었다고 시인한 바 있다. Peter W. Schroth, 앞의 논문, p. 595.

20) 공무원에 대한 뇌물로 사업권이 주어진다면, 돈과 자원의 배분이 왜곡될 것이며, 경제적 비효율과 투자감축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한다. Tor Krever, "CURBING CORRUPTION? THE EFFICACY OF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North Carolin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Commercial Regulation(Fall, 2007), p. 84.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²¹⁾ 결국 1977년 12월 19일 FCPA가 미국 연방법으로 제정된다. 사실 애초 포드 행정부는 해외 뇌물을 형사적으로 처벌하기보다는 해외 뇌물의 자발적 신고만을 요하는 법을 제정하기를 희망하였으나 미 의회는 회계 규정뿐만 아니라 형사적·민사적 제재를 가하는 강력한 법안을 선호하였고,²²⁾ 결국 이러한 입장을 지지하는 카터 행정부때 결국 FCPA가 제정되었다.²³⁾²⁴⁾

하지만 FCPA는 제정될 때부터 상당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외국에서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 그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 사법당국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점 등이 비판이 되었다.²⁵⁾ 하지만 비판의 가장 큰 이유는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미국 기업들이 다른 나라 경쟁 기업보다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이었다.²⁶⁾ 전 세계적으로 부패에서 자유로운 나라들이 별로 없는 형편이고,²⁷⁾ 사업을

21) 부패의 폐해에 대해서는 Ethan S. Burger & Mary S. Holland, "WHY THE PRIVATE SECTOR IS LIKELY TO LEAD THE NEXT STAGE IN THE GLOBAL FIGHT AGAINST CORRUPTION", *Fordham International Law Journal*(Vol. 30, 2006), p. 45 이하 참조.

22) 의회 안에서도 처음에는 입장이 갈렸었다고 한다. Daniel J. Grimm,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IN MERGER AND ACQUISITION TRANSACTIONS: SUCCESSOR LIABILITY AND ITS CONSEQUENCES", *NYU Journal of Law & Business*(Fall, 2010), p. 260

23) Lucinda A. Low, Claudius O. Sokenu & Donald Zarin,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2008: Coping with Heightened Enforcement Risks", *Practising Law Institute*, 2008, p. 16.

24) FCPA가 몰고 온 효과와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Tor Krever, 앞의 논문, p. 83 이하 참조.

25) FCPA의 불명확성 내지 불확실성에 대한 상세한 비판은 Jennifer Dawn Taylor, "AMBIGUITIES IN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UNNECESSARY COSTS OF FIGHTING CORRUPTION?", *Louisiana Law Review*(Summer, 2001), p. 861 이하; Lauren Giudice, 앞의 논문, p. 348 이하 참조.

26) Amy Deen Westbrook, 앞의 논문, p. 510.

위해 해당 나라의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는 관행이 만연한 상태에서 미국이 자국 기업들의 해외 뇌물에 대해서 엄격한 처벌을 한다면 소중한 사업기회를 다른 나라의 경쟁기업에 빼앗긴다는 논리이다.²⁸⁾

나. 1988년 1차 개정

결국 이와 같은 미국 기업들의 지속적인 불만에 대한 대응으로 1988년 FCPA가 처음으로 개정되었다. 표면상으로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는데, 즉, 중개인을 통한 뇌물 지급의 경우 인식의 정도에 대해 “knowing or having reason to know”로 규정했던 것을 “knowing”으로 개정하였으며, 두 개의 적극적 항변사유(affirmative defenses)도 도입하였다.²⁹⁾ 하지만 전반적인 취지는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원래 제3자에 대한 지급은 회사가 그 지급이 뇌물로 쓰일 것이라는 점을 알거나 알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while knowing or having reason to know)에만 금지되었다. 그러나 1988년 개정에서는 인식의 범위를 좀 더 좁혀서 reason to know는 삭제하고, 제3자가 그런 행위에 가담하고 있거나, 실제로 그런 행위가 일어 날 것이 확실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만

27) 가장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나 영국 역시 부패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Tor Krever, 앞의 논문, p. 84.

28) FCPA가 제정되고 얼마 되지 않아 미 의회 내에서도 이 법이 해외에서 사업하는 미국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역효과에 대한 우려가 표시되었다고 한다. Homer E. Moyer, Jr., John E. Davis & Michael L. Burton, “THE U.S.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ITS ORIGINS, DEVELOPMENT, IMPLEMENTATION, AND ISSUES TO WATCH”, American Bar Association Center for Continuing Legal Education National Institute(March 21-22, 2002), p. 4.

29) 오규진, 앞의 논문, p.36.

처벌할 수 있게 하였다.³⁰⁾ 또한 1988년 개정에서 두 개의 affirmative defenses를 새롭게 도입하였다. 즉 금전의 지급이 해당 국가의 법에 의해 적법한 경우나 여행이나 숙박비용 등과 같이 합리적인 실비 지출인 경우 면책 될 수 있는 방어수단을 도입하였다.

여기서 한 가지 인상적인 것은 1988년 개정에서 미 의회는 대통령 및 미 행정부에 미국의 글로벌 파트너인 OECD 회원국들을 독려하여 그들과 반부패 협약을 맺을 것을 촉구하였다는 점이다.³¹⁾

다. 1998년 2차 개정

이에 FCPA는 1998년에 두 번째 개정을 맞게 된다. 이는 실제 미국의 글로벌 파트너인 OECD 회원국들이 앞서 언급한 OECD 부패방지협약을 채택함에 따라 미국도 이 협약을 국내법으로 이행하기 위해 기존 FCPA를 일부 개정한 것이다. 따라서 예컨대 OECD 부패방지협약에 있는 “부적절한 이익(improper advantage)”같은 표현이 이때 삽입되었다. 하지만 1998년 개정의 하이라이트는 관할 및 적용대상 대폭 확대이다.³²⁾ 이때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미국 국민이나 미국 기업이 미국 밖에서 뇌물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주간 통상(interstate commerce)의 수단을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국적관할(nationality jurisdiction) 특칙을 신설하여 관할을 확대하였다.³³⁾ 또한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FCPA 책임을

30) Lucinda A. Low, Claudius O. Sokenu & Donald Zarin, 앞의 책, p. 67.

31) Marika Maris & Erika Singer,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American Criminal Law Review(Spring, 2006), p. 576 참조.

32) Marika Maris & Erika Singer, 앞의 논문, pp. 576-578.

33) Thomas McSorley,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American Criminal Law Review(Spring, 2011), p. 759.

물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미국 기업에 의해 고용되었거나 대리인으로 행위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처벌대상을 크게 확대하였다. 한편 외국 공무원의 개념을 확장하여 공적 국제기구의 임직원도 포함되도록 하였다.³⁴⁾ 즉, 전반적으로 처벌 대상 및 관할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한 것이다.

2. 최근 동향

그러나 이러한 개정이 FCPA 사건의 실질적인 증가로 이어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였다. 즉 현재의 법은 이미 1998년 개정에서 그 전모를 갖추었지만 FCPA가 그토록 많은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결국 FCPA를 집행하는 방식이 법의 실질을 변화시키고, 업계의 지각변동을 초래한 것이다.³⁵⁾

일단 FCPA 의율 건수가 급증하였다. 처음 28년 동안은 DOJ나 SEC가 FCPA를 의율한 사건이 통상 일 년에 2, 3건에 불과하였지만 최근에는 거의 10배 이상으로 사건 수가 급증하였다고 한다.³⁶⁾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불과 3년 사이에 의율된 사건수가 무려 90건으로 처음 제정된 1977년부터 2005년까지 28년 사이에 의율된 전체 사건 수와 맞먹는다고 하니 가히 폭발적인 증가세라고 할 수 있다.³⁷⁾³⁸⁾

34) O'Melveny & Myers LLP,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Handbook" (Sixth Edition, 2009), pp. 1-2. O'Melveny Handbook은 로펌 등 실무자가 집필한 FCPA 관련 자료 중에서는 단연 으뜸이다.

35) Amy Deen Westbrook, 앞의 논문, pp. 494-495.

36) Amy Deen Westbrook, 앞의 논문, p. 495.

37) Roger M. Witten, Kimberly A. Parker, Jay Holtmeier, Thomas J. Koffer, 앞의 논문, p. 692.

38) Shearman & Sterling LLP에서 발간하는 FCPA Digest(January 2011)에 의하면 2009년에는 43건, 2010년에는 47건이라고 한다. Shearman &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사건의 수만은 아니다. DOJ나 SEC가 FCPA를 의율하여 거둬들이는 민형사상 징벌금의 액수 역시 폭등하였다. 2010년에 FCPA로 DOJ와 SEC가 거둔 벌금(fine), 과징금(penalty), 이익환수금(disgorgement) 등의 합계는 무려 18억불에 이른다. 불과 30만불에 그친 2000년과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변화를 알 수 있다. 더구나 다른 형사 사건과의 비교 관점에서 볼 때 그 비중과 위상도 완전히 달라졌다. 즉 2010년 미 법무부가 전체 형사 사건으로 거둔 징벌금 중에 무려 50%가 FCPA 관련 사건으로 거둔 것이니 그 비중을 알만 하다.³⁹⁾ 결국, 법은 1998년 이후에 바뀐 적이 없음에도 당국의 의지와 방침이 완전히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더욱 놀라운 사실은 2010년 FCPA 관련 징벌금의 거의 90% 정도를 미국 기업이 아니라 외국 기업으로부터 거뒀다는 점이다.⁴⁰⁾ 이는 다시 말하면 미 DOJ나 SEC가 특히 외국 기업에 대해서 매우 공격적으로 FCPA를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지금까지 FCPA로 의율되어 가장 높은 금액의 징벌금을 낸 상위 10개 기업 중에 9개 기업이 외국 기업이라고 한다. 그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⁴¹⁾

순위	회사명	국적	징벌금(달러)	연도
1	Siemens	독일	8억 ⁴²⁾	2008
2	KBR / Halliburton	미국	5억 7,900만	2009

Sterling LLP, FCPA Digest(January 2011), p. i 참조.

39) Mike Koehler, 앞의 논문, p. 104 이하 참조.

40) Mike Koehler, 앞의 논문, p. 105.

41) 출처 The FCPA Blog(www.fcpablog.com). 이 블로그는 FCPA 관련된 뉴스나 사건 동향에 대해 알려주는 블로그로서 매우 풍부하고 유익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블로그에 의하면 징벌금 상위 10개 기업의 순위를 계속 업데이트 해왔는데, 가장 최근의 순위를 표로 만들어 보았다.

42) 미국에 대한 징벌금 액수만 8억 달러이다. Siemens의 모국인 독일에서

순위	회사명	국적	징벌금(달러)	연도
3	BAE	영국	4억	2010
4	Snamprogetti Netherlands B.V. / ENI S.p.A	네덜란드/이탈리아	3억 6,500만	2010
5	Technip S.A.	프랑스	3억 3,800만	2010
6	JGC Corporation	일본	2억 1,880만	2011
7	Daimler AG	독일	1억 8,500만	2010
8	Alcatel Lucent	프랑스	1억 3,700만	2010
9	Magyar Telekom / Deutsche Telekom	헝가리/독일	9,500만	2011
10	Panalpina	스위스	8,180만	2010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 사법당국이 FCPA를 과감히 의율하는 대상이 외국기업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이에 대한 대비와 연구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내 기업 중에 ADR이 유통되는 기업도 상당수 일 뿐만 아니라 이들 기업이 전 세계를 무대로 비즈니스를 하는 과정에서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FCPA 적용에 있어서 매우 취약한 상태일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Ⅲ. 반부패 규정(Anti-Bribery Provisions)

1. 개요

FCPA상 반부패 규정은 적용대상자에 따라 세 개의 조항으로 구성된다. issuer에 대해서는 15 USC §78dd-1, domestic concern에 대해

도 뮌헨 검찰청의 수사에 의해 역시 8억 달러 상당의 징벌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니, 결과적으로 합계 16억 달러 이상의 징벌금을 납부한 셈이다. O'Melveny & Myers LLP, 앞의 책, p. 5 참조

서는 15 USC §78dd-2, 그 밖의 foreign non-resident에 대해서는 15 USC §78dd-3이 적용된다. 따라서 FCPA상 반부패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 사실 중 적용대상자에 대한 이해가 제일 중요하다. 이에 따라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 제공행위를 금지하는 기본적인 요건은 상당 부분 동일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조문별로 나눠서 기술하지 않고 모두에 적용대상자에 따른 구분을 실시한 후 이어서 공통적인 구성요건을 설명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한편 적용대상자에 관한 이해 다음으로 중요한 요건은 관할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FCPA는 기본적으로 연방법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지역 관할(territorial jurisdiction)을 원칙으로 하되, 미국 국적의 개인이나 기업이 해외에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 지역 관할 요건 없이도 FCPA 적용이 가능하도록 국적 관할(nationality jurisdiction) 특칙을 마련해 두고 있다. 지역 관할 요건은 주간통상 수단(instrumentality of interstate commerce)을 이용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주간 혹은 국가간 메일, 전신, 전화, 계좌이체 등의 수단을 이용하면 지역관할이 생긴다고 해석한다.⁴³⁾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관할 요건에 등장하는 instrumentality와 외국공무원의 범위에서 등장하는 instrumentality는 전혀 다른 의미라는 점이다. 전자는 그야 말로 수단을 의미하는 반면 후자는 정부대행기관을 의미하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⁴⁴⁾

2. 구성요건

43) 15 U.S.C. §78dd-2(h) 정의 규정 참조.

44) 윤충원, 앞의 논문, p. 93.

가. 적용대상자

(1) Issuer

issuer는 1934년 증권거래법 제12조(15 U.S.C. §78I)에 따라 증권이 등록되어 있거나, 동법 제15(d)조(15 U.S.C. §78o(d))에 따라 보고 의무가 있는 회사를 말한다.⁴⁵⁾ 또한 그 임직원, agent, 주주들도 그들의 국적이나 거주지와 상관없이 issuer 조항(15 U.S.C. §78dd-1)이 적용된다. issuer는 미국에서 설립된 회사뿐만 아니라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외국 회사도 포함한다. 따라서 미국주식예탁증서라 불리는 ADR (American Depositary Receipt)이 발행된 외국회사의 경우 issuer에 해당된다.

다만 외국기업인 issuer는 주간통상(interstate commerce) 요건을 갖추어야 관할이 생기는데 반해 미국 issuer가 미국 밖에서 뇌물을 제공할 경우에는 주간 통상 요건조차도 요하지 않는 관할에 관한 특칙도 두고 있다.⁴⁶⁾ 하지만 지역관할을 발동시키는 주간통상 요건이 매우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연방법상 관할 발동 요건인 주간통상 요건은 범죄 과정(모의과정도 포함한다)에서 미국의 이메일, 전화 등 통신수단이 이용되거나 송금이나 계좌이체에 미국 은행이 조금이라도 관여가 되면 충족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⁴⁷⁾

실제로 Statoil ASA 사건을 보면 이를 여실히 알 수 있다. 이 회

45) 15 U.S.C §78dd-1(a)

46) 15. U.S.C. §78dd-1(g)

47) 미국 연방법상 형사범 관련 규정 중에는 특정 금지행위를 하는 사람이 주간통상 수단을 이용할 경우 처벌한다는 식의 조문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대표적인 것이 mail fraud나 wire fraud의 경우이다. 이런 경우 주간통상 요건은 매우 폭넓게 해석하는 것이 통상이다. 참고로 오택림, “미국 연방법상 mail and wire fraud에 관한 연구”, 법조(Vol. 657), (2011. 6.), p. 12, 28 참조.

사는 노르웨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석유회사인데, 이란의 석유 및 가스 개발 사업을 위해 이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ADР이 상장되어 있고, 두 건의 뇌물이 뉴욕에 있는 은행계좌로부터 이체되었다는 이유로 미국 연방 검찰의 수사를 받아 2천만 불이 넘는 징벌금을 지급하였다. 더구나 본국인 노르웨이 사정당국에 의해 이미 처벌을 받았음에도 미국이 FCPA로 의율한 점이 특징이다.⁴⁸⁾

(2) Domestic Concern

issuer 다음 조항인 15 U.S.C. §78dd-2에 규정된 domestic concern 은 (i) 미국 시민권자, 미국 국민,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ii) 미국에서 설립되었거나 혹은 해외에서 설립되었어도 주된 사무소가 미국인 기업체를 의미한다. 또한 이들의 임직원, agent, 주주들의 행위도 동 조항이 적용된다.

domestic concern의 경우에도 지역 관할(territorial jurisdiction)이 생기기 위해서는 interstate commerce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즉 미국 메일이나 전화가 사용되었거나, 미국 은행의 계좌이체 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domestic concern 중에서도 미국 시민권자, 미국 기업 등은 nationality jurisdiction이 생길 수 있음은 issuer의 경우와 같다. 즉 미국 국적의 자연인이나 법인 등이 미국 밖에서 뇌물 지급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interstate commerce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도 관할이 생겨서 FCPA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즉, 미국 시민권자나 미국 기업은 issuer 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리고 지역

48) 미 법무부 보도자료 참조, "U.S. Resolves Probe Against Oil Company that Bribed Iranian Official(Oct. 13, 2006)" (<http://www.usdoj.gov/usao/nys/pressreleases/October06/statoildeferredprosecutionagreementpr.pdf>)

관할이 생기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항상 인적관할이 발동되어 FCPA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3) Foreign Non-Resident

1998년 개정에서 가장 특징적인 조항이 바로 15 U.S.C. §78dd-3으로서,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 하에 FCPA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즉, issuer나 domestic concern이 아닌 자, 즉 미국에 거주하지 않은 외국인 혹은 외국 기업 등에 대해서도 FCPA를 적용하겠다고 적용대상을 엄청나게 확대한 것이다. 물론 FCPA를 발동하기 위한 지역관할 요건은 충족해야 한다.

여기서 등장하는 요건이 “while in the territory of the United States”이다. 일용 문언상으로는 행위자가 행위 당시 미국에 물리적으로 현존(physically present)할 것을 요하는 것처럼 보이나, 현행 실무는 이를 요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듯하다.⁴⁹⁾ 즉 부정한 지급을 촉진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가 미국과 관련이 있으면 되고, 나아가 이를 직접 할 수도 있고,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접 혹은 대리인을 통해 미국 메일이나 전화, 전신 등을 이용하면 지역관할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해석할 경우 결국 interstate commerce 요건과 별 차이가 없는 셈이어서 비슷한 요건을 중첩적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게 된다.⁵⁰⁾

49) O'Melveny & Myers LLP, 앞의 책, p. 10.

50) 원래 입법취지는 interstate commerce 요건과 차별화된 물리적인 현존을 필요로 하기 위해 동 문구를 삽입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미 DOJ의 실무 관행이 보다 공격적으로 변하면서 미국 밖에서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미국 내의 행위를 야기하게 되면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Lucinda A. Low, Claudius O. Sokenu & Donald Zarin, 앞의 책, p. 38 이하 참조.

아무튼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미국에 사무소를 두지 않은 외국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들이 미국에서 증권을 발행하거나 보고의무가 있는 issuer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면서 미국의 통신망, 은행전산망 등을 조금이라도 이용하기만 하면 미국 연방법인 FCPA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니 참으로 놀라운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전 세계 어디에서 뇌물이 지급되든, 그 뇌물을 받는 공무원이 누구이든, 그 뇌물을 지급하는 사람이 누구이든, 그 과정에서 미국의 관련성을 조금이라도 인정할 수 있으면 FCPA를 발동하겠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부패를 마치 virus와 같은 인식 하에 규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이다.

(4) Officers, Directors, Employees, Agents, and Stockholders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issuer, domestic concern, foreign non-resident를 대리하여 행위를 한 임원, 직원, 대리인, 주주 등도 역시 같은 조항들로 의율된다. 이 경우 이들의 국적이나 거주지가 어디인지는 상관이 없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자회사나 계열사의 행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예컨대, 미국 상장사의 해외 자회사가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경우 미국의 모회사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⁵¹⁾ 이 경우 명확한 판례는 없지만 대리인 이론(agency

51)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Justin F. Marceau, "A LITTLE LESS CONVERSATION, A LITTLE MORE ACTION: EVALUATING AND FORECASTING THE TREND OF MORE FREQUENT AND SEVERE PROSECUTIONS UNDER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ordham Journal of Corporate and Financial Law(2007), p. 296 이하 참조.

theory)을 적용하여 자회사의 행위를 모회사의 agent 행위로 보아 모회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실무 관행이다. 실제로 미국 회사의 중국 자회사가 국영 병원의 직원에게 뇌물을 준 사건에서 미국 DOJ는 해당 자회사에 대해서는 FCPA를 의율하여 형사책임을 물었는데⁵²⁾ SEC는 더 나아가 미국 모회사에게 agency 이론을 적용하여 민사책임을 물었고, 결국 모회사는 SEC와 합의를 하였다.⁵³⁾

현재로서는 모회사에게 대리인 이론을 적용하여 해외 자회사의 행위에 대한 FCPA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구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은 없어 보인다. 사실 FCPA와 관련된 많은 case가 미국 DOJ와의 NPA(non prosecution agreement)나 DPA(deferred prosecution agreement)로 끝나거나 SEC와의 합의(settle)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아직은 상당히 많은 이슈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축적되지 못하는 실정이다.⁵⁴⁾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모회사가 자회사의 행위를 승인했거나, 그 이익을 같이 향유했거나, 뇌물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 경우 등에는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한다. 나아가 전혀 몰랐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상 조그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충분히 알 수 있었거나, 이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예방에 실패한 경우 등의 경우에도 막상 모회사에 대한 관계 당국의 수사가 진행된다면 책임을 인정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52) United States v. DPC (Tianjin) Co. Ltd., No. 05-CR-482 (C.D. Cal. 2005).

53) In the Matter of Diagnostic Products Corp., SEC Administrative Proceeding File No. 3-11933 (May 20, 2005).

54) FCPA 사건에서 미국 연방검찰이 NPA나 DPA를 애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고찰은 Lauren Giudice, 앞의 논문, p. 360 이하

나. 뇌물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약속, 재가(an offer, payment, promise to pay, or authorization of payment)

우리의 뇌물공여와 마찬가지로 실제 제공한 경우뿐만 아니라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경우도 범죄는 성립한다. 나아가 제공을 재가한 경우도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 즉 agent의 역할을 하는 해당 지역 컨설팅 회사가 뇌물을 제공하는 것을 승인하였다면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순간 범죄가 성립한다고 본다.⁵⁵⁾ 실제 그 공무원이 권한 남용 행위로 나아갔는지 여부도 범죄 성립에 상관없음은 물론이다.

다. 가치있는 어떤 것(anything of value)

가치 있는 것이면 어떤 것도 상관없으며, 금액의 하한도 없다. 따라서 현금이나 선물뿐만 아니라 각종 형태의 접대도 모두 포함된다.⁵⁶⁾ 따라서 거래처 직원에 대한 술이나 향응의 제공도 뇌물로 인정될 수 있다. 여행 역시 문제될 수 있다. 각종 세미나 명목이나 교육 명목의 여행의 경우 실제 세미나나 교육에 할당된 시간 외에 여행의 상당부분을 관광과 여가활동에 소비하였다면 이 역시 뇌물의 제공으로 의율될 수 있다.⁵⁷⁾

라. 직·간접적으로(directly or indirectly)

직접 할 경우 불법이 된다면 이를 간접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동일

55) SEC v. Monsanto Co., No. 05-CV-14 (D.D.C. 2005).

56) Amy Deen Westbrook, 앞의 논문, p. 538이하 참조.

57) SEC v. Lucent Tech., Inc., 07-CV-2301.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Lucinda A. Low, Claudius O. Sokenu & Donald Zarin, 앞의 책, p. 201 이하 참조

하게 처벌된다. 즉, 중간에 중개인(intermediary)⁵⁸⁾을 끼워 넣어 법을 회피하려는 시도는 용납되지 않는다. 따라서 FCPA 적용대상자가 중개인의 뇌물지급행위를 알았거나,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에도 의도적으로 외면⁵⁹⁾하였다면 직접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FCPA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⁶⁰⁾ 더구나 법문은 그 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로 지급될 사정을 알면서 중개인에게 돈을 지급하면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그 후 중개인이 실제 그 돈을 외국공무원에게 뇌물로 제공하는 행위가 성공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성부와 상관없어 보인다.

결국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개인의 행위에 대한 인식의 정도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1988년 개정에서 이를 좁히는 방향으로 개정하였으나, 현재의 실무 관행은 “knowing”에 대해 폭넓게 해석하여 개정 전과 차이가 없어졌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이다.⁶¹⁾

실제로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의 경우 현지 컨설팅회사나 브로커 등 현지중개인에게 필요 이상의 돈을 커미션 등의 명목으로 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 커미션의 일부라도 외국공무원에게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중개인에게 돈을 주는 행위로 바로 FCPA

58) 이에 대한 정의는 없지만, 컨설턴트, 배급업자, 합작회사, 해외 자회사, 하청업체, 에이전시 등 어떠한 형태도 중개인이 될 수 있다. David Isaak, “FCPA COMPLIANCE - NAVIGATING THE MINEFIELD OF INTERMEDIARIES”, International Trade Law Journal(Winter, 2008), pp. 22-23.

59) 통상 willful blindness라고 표현한다. Thomas McSorley, 앞의 논문, p. 761 참조.

60) Lucinda A. Low, Claudius O. Sokenu & Donald Zarin, 앞의 책, p. 65 이하 참조

61) Amy Deen Westbrook, 앞의 논문, p. 544 이하; Lucinda A. Low, Claudius O. Sokenu & Donald Zarin, 앞의 책, p. 67 이하 참조

가 적용될 수 있다.

마. 외국공무원에게(to a foreign official)

FCPA는 외국공무원의 정의를 상당히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선출직 여부, 중앙·지방정부 여부를 불문하고, 지위고하도 상관 없다. 각종 부처의 공무원, 일반직원, 국제기구의 임직원, 정당, 정당 간부, 정당 추천 후보자 등도 포함한다.

사실 외국공무원의 정의와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 많은 것이 바로 대행기관(instrumentality)의 해석이다. 이에 대해 따로 정의규정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공기업 혹은 국영기업(state-owned or controlled enterprises)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하지만 과연 몇 퍼센트를 소유하고 있어야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이에 관한 논란이 많은 형편이다.⁶²⁾ 통상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에 해당한다고 보나 50%가 instrumentality의 적용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며 여러 기준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고 한다. 즉 해당 기업의 성격, 설립목적, 정부에 대한 통제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따라서 비록 정부 지분이 50% 미만이어도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통제가 가능하다면 FCPA 적용이 가능하다.⁶³⁾ 사실 애초

62) Joel M. Cohen, Michael P. Holland & Adam P. Wolf, "UNDER THE FCPA, WHO IS A FOREIGN OFFICIAL ANYWAY?", Business Lawyer(August, 2008), p. 1243 이하; Robert C. Blume, J. Taylor McConkie, 앞의 논문, p. 92 이하 참조.

63) 이에 관해 참고할 수 있는 미 연방법원 사건이 하나 있는데, 바로 플로리다주 남부 연방법원 사건인 US v. Joel Esquenazi 사건이다. 이 사건은 Terra Telecommunication Corp.라는 통신회사가 아이티 국영 통신회사 임직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건인데, Terra사의 사장이었던 Joel Esquenazi에게 무려 15년이라는 FCPA 관련 최고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으로도 유명하다. 이 사건을 맡은 Martinez 판사는 아이티 통신회사

FCPA 제정 당시 입법취지와는 달리 최근에 의율되는 사례는 전통적인 의미의 공무원에 대한 뇌물이 아니라 상당부분 공기업 혹은 국영기업의 직원들에 대한 뇌물인데,⁶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마저 없게 되자 업계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는 것으로 보인다.⁶⁵⁾ 즉 거래처 직원에 대한 접대를 함에 있어서 해당 거래처에 정부의 지분 나아가 통제력이 어느 정도인지 여부를 모를 경우 행위자도 모르는 사이에 FCPA 의율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⁶⁶⁾

바. 부정하게(Corruptly)

금품 제공자 입장에서는 이로 인해 외국공무원에게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 대가를 얻으려는 의사가 중요하다. 즉, 부정하게

가 FCPA상 국가행정대행기관(instrumentality)에 해당하는 여부에 관한 배심원 지시사항(jury instruction)에서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다. (1) 아이티 국민이나 거주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2) 주요 이사회 임원을 국가가 임명하는지, (3) 아이티 정부가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지 혹은 조세 감면 등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지 여부 등을 포함하여 아이티 통신회사에 대한 정부통제력의 범위, (4) 아이티 통신회사가 해당 역무 분야에서 독점사업자로 지정되었는지 등 아이티 법률상 특수한 의무나 특권을 누리는지, (5) 일반적으로 아이티 통신회사가 정부기능을 수행한다고 인식되고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삼고, 다만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할 필요도 없고, 어느 한 요건이 결정적이지도 않다고 하였다(US v. Joel Esquenazi, Case Number:09-21010-Cr-MARTINEZ 참조).

64) Mike Koehler, 앞의 논문, p. 108.

65) Joel M. Cohen, Michael P. Holland & Adam P. Wolf, 앞의 논문, p. 1270 이하 참조. 이 논문은 DOJ와 SEC가 FCPA를 준수하려는 기업들에게 보다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66) 지분의 전부 혹은 일부에 국가 자금이 투입된 기업이 상당수인 중국 같은 나라에서는 사실상 누구나 공무원으로 해석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Lawrence J. Trautman & Kara Altenbaumer-Price,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MINEFIELD FOR DIRECTORS", Virginia Law & Business Review(Spring, 2011), p. 151.

외국공무원의 지위나 권한의 남용·오용행위를 매수하고자 하는 의사가 중요하다. 따라서 본 요건은 사업의 획득, 유지 등을 위하여 공무원의 행위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이를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과 함께 해석되어야 한다. 아직 법원의 명시적인 판결은 없지만, 만약 공무원이 특정 사업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뇌물 제공자 측에서 그런 대가를 바란 것은 아니었다는 식의 변소가 성공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한다.⁶⁷⁾

3. 예외 및 적극적 항변(exception and affirmative defenses)

가. 예외(Exception)

통상 급행료 조항으로 불리는 이 예외 조항은 외국 공무원의 일상적인 정부 행위 수행을 촉진시키거나 원활하게 진척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불하는 비용은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⁶⁸⁾ 일상적인 정부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보면 외국에서 어떤 자가 사업을 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 허가, 면허 또는 기타 공문을 얻고자 하는 행위, 비자나 작업 주문서와 같은 정부 서류 처리, 상품을 전국에 수송하기 위하여 계약 수행이나 점검과 관련된 경찰의 보호, 우편물 찾기 및 배달 또는 점검 일정을 제공하는 행위, 전화 서비스, 전기 및 수도 공급, 화물 적재 및 양륙 또는 품질 저하가 되는 부패성 생산품 또는 생필품의 보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행위를 말한다고 한다.⁶⁹⁾

이는 일종의 급행료 성격의 돈에 대해 예외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으나 실무상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극히 소극적이다. 일

67) O'Melvelny & Myers LLP, 앞의 책, p. 19.

68) “유효성 급품”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오규진, 앞의 논문, p. 37.

69) 15 U.S.C. § 78dd-1(f)(3)

단 공무원의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에서의 행위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특정 사업 분야의 인허가 등에 관해서는 적용된 예가 없다. 결과적으로 아주 하위직 공무원의 기속행위에 대해 극히 미미한 액수의 성의표시 정도를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OECD 부패방지협약조차 이 예외를 인정하지 않으며,⁷⁰⁾⁷¹⁾ OECD의 다수의 회원국이 동 협약을 국내법화 하면서도 이와 같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조차 예외조항에 대한 비판이 상당한 형편이다.⁷²⁾

오히려 실무에서는 통관절차 등 급행료 지급이 사업상 만연한 영역을 타깃으로 삼고 FCPA 수사를 하는 경향이어서 사실상 사문화되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⁷³⁾

70) OECD 부패방지협약에는 처음부터 이 예외조항이 들어 있지 않았지만, 그 주석서에는 이를 인정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 하지만 2009년 채택한 권고안에는 각 회원국에게 동 예외 인정의 종식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for Further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26 NOVEMBER 2009), VI, VII 참조

71) 최근 이에 관한 OECD의 변화에 대해서는 Jon Jordan, "THE OECD'S CALL FOR AN END TO 'CORROSIVE' FACILITATION PAYMENTS AND THE INTERNATIONAL FOCUS ON THE FACILITATION PAYMENTS EXCEPTION UNDER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University of Pennsylvania Journal of Business Law(Summer 2011), p. 883.

72) 대표적으로 Alexandros Zervos, "AMENDING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REPEALING THE EXEMPTION FOR 'ROUTINE GOVERNMENT ACTION' PAYMENTS", Penn State International Law Review(Summer 2006), p. 251이하; Amy Deen Westbrook, 앞의 논문, p. 541이하 참조. 이에 의하면 이 조항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법과도 충돌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미국 법(18 USC §201 등 미국 국내 뇌물죄 조항)과 불합치할 수 있다고 한다.

73) Mike Koehler, 앞의 논문, p. 122 이하 참조.

나. 적극적 항변 사유(Affirmative defenses)

1988년 개정 때 두 개의 적극적 항변사유도 함께 도입되었다. 그 중 하나는 해당 지역 성문법(written law)에 의하면 합법적인 경우이다. 성문법으로 허용되지 않은 한 그와 같은 관행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⁷⁴⁾ 그러나 사실 문명국 중에 아무리 사소한 금액일지라도 공무원에 대한 부정한 금품 제공을 성문법으로 허용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는 부패가 만연한 나라조차 성문법으로 합법화 하고 있는 나라는 없기 때문에 역시 실무상으로는 거의 사문화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특정국의 경우 해외 기업이 그 나라에서 특정 사업을 할 경우에는 국영교육기금에 일정액을 기부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있다거나 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동 조항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 자신에게 허가권을 수여할 수 있는 공무원이 좋아하는 특정 기금을 골라서 기부를 한다면 이 역시 문제될 수 있다고 한다.⁷⁵⁾

다른 하나의 적극적 항변사유는 합리적인 실비(reasonable and bona fide expenses) 지출 항변이다. 여기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촉, 전시, 설명 등과 직접 관련된 비용(예컨대, 여비, 식비, 숙박비 등)이 해당될 수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계약의 이행에 수반되는 비용도 포함될 수 있는데, 예컨대 석유채굴권 계약 같은 경우 담당 공무원의 해당 공장이나 설비 등에 대한 점검 등 계약 실행을 위해 수반되는 제반 비용이 소요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지급은 적극적 항변사유가 될 수 있다.

74) 그 예로 한국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을 드는 논문이 있다.

Dale Chakarian Turza, "A GUIDE TO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 ELEMENTS, DUE DILIGENCE, AND AFFIRMATIVE DEFENSES", American Bar Association Center for Continuing Legal Education National Institute(March 21-22, 2002), p. 9.

75) O'Melveny & Myers LLP, 앞의 책, pp. 21-22.

IV. 회계규정(Accounting Provisions)

1. 개요

FCPA의 회계규정은 반부패규정과 달리 오로지 issuer에만 적용된다. 미국 기업인지 여부는 상관이 없고, 외국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ADR이 유통되는 등 issuer에 해당하면 회계규정이 적용된다.⁷⁶⁾ 또한 issuer가 50%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자회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⁷⁷⁾

회계규정의 주된 내용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기장 및 회계처리를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의 books and records이고, 두 번째는 내부통제시스템 수립 의무를 부과하는 internal controls이다.

회계규정은 반부패규정과 달리 주간 통상요건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issuer이지만 하면 회계규정에서 부과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주간 통상요건과 상관없이 FCPA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사실 회계규정은 반부패 규정 보다 근본적인 부패 방지 장치라고 할 수 있다. 회계규정에서 부여하는 모든 의무를 따를 경우 부패를 저지를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수사당국이 반부패 규정의 관할요건 충족의 어려움이나 입증의 어려움을 회피할 수 있게 하는 안전망⁷⁸⁾이 되거나 대상기업이 수사당국과의 합의 과

76) Stuart H. Deming, "THE FOREIGN PRACTICES ACT: THE ACCOUNTING AND RECORD-KEEPING PROVISIONS", American Bar Association Center for Continuing Legal Education National Institute(March 21-22, 2002), p. 2; Andrea Dahms & Nicolas Mitchell,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American Criminal Law Review(Spring, 2007), p. 609.

77) 15 U.S.C. § 78m(b)(6)

78) Dow Chemical 사건이 대표적인 예이다. 인도 자회사가 인도 공무원들

정에서 보다 낮은 단계의 의율을 유도할 수 있는 접점이 되기도 한다.

2. 기록 유지 의무(books and records)

모든 issuer는 자산의 처분이나 거래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을 만큼 상당히 자세하게 기장 및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⁷⁹⁾ 이는 재무제표 같은 보고용 혹은 공시용 문서뿐만 아니라 지출보고서, 전표, 비용처리를 위한 영수증 등 사업과정에서 생성되는 모든 기록에 적용됨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회사의 비용처리를 위해서 식사나 접대 자리에 가공의 거래처 인물을 기재하거나 혹은 반대로 식사나 접대 자리에 있었던 인물의 고의적인 누락 등은 모두 회계규정 위반이 될 수 있다.⁸⁰⁾

이 규정은 다음 세 가지 부적절한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첫째, 불법 거래에 대한 기록을 누락하는 것, 둘째, 불법거래를 감추기 위해 기록을 조작하는 것, 셋째, 양적으로는 정확하나 거래의 질적인 측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기록의 작성이 그것이다.⁸¹⁾

따라서 예컨대, “00원 커미션 지급”, “00원 접대비 지출” 등으로 액수 및 지출 여부를 정확하게 기록했다라도, 그 돈의 전부 또는 일부가 FCPA상 문제 있는 곳에 사용된 것이라면, 그 지출의 질적인 측

에게 뇌물을 제공하면서 이에 대한 기장 및 회계처리를 정확히 하지 않은 사건이었는데, interstate commerce 요건을 갖추지 못해 반부패 규정으로는 의율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회계규정으로만 의율해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79) 15 U.S.C. §78m(b)(2)(a).

80) O'Melveny & Myers LLP, 앞의 책, p. 24.

81) Colleen P. Mahoney et al, "THE UNITED STATES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ENFORCEMENT TRENDS", PLI Corp. Law&Practice, Course Handbook Series No. 29082(2011), p. 5.

면을 충분히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고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실제 중국 국영기업체의 직원에 대해 호화로운 여행을 보내주면서 이를 공장시찰로 회계처리를 하였는데, 실제로 공장에 간 적이 없다면 FCPA 회계규정에 비추어 볼 때 부정확한 기록이 될 수 있다.⁸²⁾

결국 “상당히 자세하게(in reasonable detail)”의 정도의 문제로 귀착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법원은 “사려 깊은 공무원들이 그들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수준의 자세함”을 의미한다고 적고 있다.⁸³⁾

요약하면 기록은 어떠한 부적절한 행동도 SEC가 알 수 있는 수준의 정보가 담겨있어야 하는 셈이다. 다만 그러한 부정확한 기록이 반드시 뇌물제공과 관련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한편 동 규정의 위반이 전부 형사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FCPA는 “고의적으로(knowingly)” 장부, 기록, 계정을 위조하는 경우에만 형사처벌 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 의무 불이행이나, 누락은 면책되기 어려운 엄격책임을 지나 그래도 이는 민사책임에 그칠 뿐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다. 일단 형사처벌 대상의 경우 법정형은 매우 높다. 개인의 경우 최고 5백만불의 벌금과 최장 20년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기업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더 높아서 최대 2천 5백만불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⁸⁴⁾

또한 고의적인 회계규정의 위반은 반부패규정의 위반도 함께 의용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Baker Hughes, Inc. 사건⁸⁵⁾이라고 할 수 있다. 상장된 석유회사인 이 회사

82) SEC v. Lucent Technologies, Inc. (Dec. 21, 2007) 참조

83) 15 U.S.C. §78m(b)(7).

84) 15 U.S.C. §78ff(a)

85) United States v. Baker Hughes Servs. Int'l, Inc., SEC v. Baker

의 자회사가 agent에게 4백만불을 지급하면서 이를 커미션, 법률서비스 비용 등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으나 실은 이 agent를 통해 그 중 상당 금액이 카자흐스탄 국영석유회사의 직원에게 뇌물로 지급될 것을 알고 있었던 사건이다. 따라서 이 경우 반부패 규정과 회계규정의 위반이 함께 의율되었으며 결국 이 회사는 형사 벌금으로 천 백만불, 민사 징벌금(penalty)와 이익환수금(disgorgement)로 3천 3백만불을 지급하는데 합의하였다.

3. 내부통제 수립 의무(internal accounting controls)

회계규정의 또 다른 내용으로 내부통제 수립의무 조항이 있다. 즉, 모든 issuer는 거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상당한 확신을 제공할 수 있는⁸⁶⁾ 내부회계 통제권에 관한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 요구된다. 즉, 거래가 경영진의 일반적 혹은 특정한 인가에 의해 실행되었다는 점, 일반회계기준에 합당한 재무제표의 작성이 가능하도록 거래가 기록되었다는 점, 자산에 대한 설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거래에 대한 기록을 유지한다는 점, 자산에 대한 접근이 경영진의 일반적 혹은 특정한 인가에 의해서만 허락된다는 점, 자산 거래 설명에 관한 기록이 실행 가능한 간격으로 현존 자산과 비교 가능하고 제반 차이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진다는 점 등에 대해 상당한 확신을 주기에 충분할 만큼 내부회계통제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⁸⁷⁾

Hughes Inc. and Roy Fearnley. 이 사건은 중개인(intermediaries)에 관한 대표적인 사건으로도 알려져 있다. 자세한 내용은 David Isaak, 앞의 논문, p. 23 참조.

86) DOJ 사이트에 있는 한글어 번역본에는 “실행가능한 범위 안에서 보증할 수 있도록”으로 번역하고 있다.

87) 15 U.S.C. §78m(b)(2)(B)

장부 및 기록(books and records) 규정과 마찬가지로 내부회계통제 규정 역시 거래의 중요성 여부나 최저가격 조건 등이 문제되지 않는다.⁸⁸⁾ 그렇다고 동 규정에 대한 모든 위반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동 규정 역시 고의적으로 내부회계통제 시스템을 회피하거나 불이행 할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⁸⁹⁾ 하지만 고의적이지 않은 경우에도 민사책임에서 자유롭기는 어렵다.

사실 법문만 놓고 보면 이와 같은 내부회계통제 체계가 수립되어 있다면 부정한 거래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장부 및 기록 규정과 함께 놓고 보면 어떠한 형태의 부정한 자금의 집행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후에 이를 은닉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국내 기업 중에 FCPA상 issuer에 해당하거나 그 자회사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 실제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기존의 접대 관행이나 회계처리 관행에 비추어 FCPA상의 회계 규정의 엄격한 준수 여부가 문제 될 소지가 많다는 우려가 드는 것이 사실이다.

V. 우리 법과의 비교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을 방지하기 위한 국내법이 처음 제정된 것은 1998년이다. OECD 부패방지협약에 따라 국내에도 국제뇌물방지법이 제정되었다. 그 후 2010년 한번 개정되었으나, 일부 표현의 한글화 내지 순화에 그친 개정이어서 내용은 사실상 그대로이다. 앞서 소개한 FCPA가 사실상 OECD 부패방지협약 체결의 계기가 된 법률인 만큼 FCPA와 우리의 국제뇌물방지법을 비교하는 것은 향후 우리 법의 해석과 운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88) O'Melveny & Myers LLP, 앞의 책, p. 25.

89) 15 U.S.C. §78m(b)(5)

1. 회계 규정의 존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FCPA에는 반부패 규정 외에 회계 규정도 있지만, 우리 법에는 반부패 규정만 있을 뿐 회계 규정은 없다. 사실 애초 OECD 부패방지협약에는 Article 8 Accounting이란 제목으로 회계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국내법으로 채택되는 과정에서는 우리는 반부패 규정만 받아들인 셈이다. 2009년 11월에 나온 OECD Recommendation에서는 각 회원국에게 위 Article 8에 대한 적절한 국내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강하게 권고하고 있다. 향후 우리 법으로의 입법이 주목되는 대목이다. 특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회계 규정이 사실상 반부패 규정의 보완책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보면 그 효용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2. 적용 대상자

FCPA의 경우 행위 주체가 issuer, domestic concern, foreign non-resident로 나뉘지만 우리 법은 이와 같은 구별이 없다. 과연 우리 법의 해석과 관련해서 내국인과 외국인이 모두 대상이 되는지는 흥미로운 연구과제이다. 일단 내국인은 범죄지와 상관없이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의문이다. 법문 상으로는 내외국민에 대한 구별이 없는 것이 사실이나 이를 관철할 경우 외국인의 국외범을 제한 없이 처벌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형법 제5조에 의하면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해 형법조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내란의 죄, 외환의 죄 등 몇 가지로 한정해 놓고 있다. 따라서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외국인이 대한민국영역 외에서 국제뇌물방지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 외국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우리 형법이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경우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외국인이 국내에서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지급하였을 경우 우리나라에서 처벌이 가능할 것이다. 즉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는 적용되는 것이다. 문제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 대한 해석이 남아 있다. 외국공무원이 국내에 현존하고, 뇌물지급 자체도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의문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범죄의 전 과정 중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형법 제2조의 해석에 있어서 행위 또는 결과의 어느 것이라도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하면 족하다고 해석하고 있는 바,⁹⁰⁾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이 외국에서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뇌물 자금이 국내에서 송금된 경우, 뇌물 제공과 관련된 의사표시나 공모가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등에는 관할이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렇게 본다면 앞서 설명한 FCPA상 장소적 관할(territorial jurisdiction)의 interstate commerce 요건과 상당히 비슷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여 향후 우리 법의 해석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외국공무원

FCPA와 우리 법상 외국공무원에 대한 규정은 매우 큰 차이를 보

90) 이재상, 형법총론(신정판), (1995), p. 37 참조

이고 있다. 우선 FCPA는 정당, 정당 간부, 정당 후보자에 대한 뇌물 제공 행위도 금지하고 있으나, 우리 법상 “외국공무원 등”의 범위에 이들은 포함되지 않는다.⁹¹⁾

한편 FCPA의 경우 공적업무의 수행을 대행하는 instrumentality에 대한 구체적인 설시가 없는 반면 우리 법의 경우에는 제2조 제2호에서 이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외국정부로부터 공적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사람, 특정한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외국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하였거나 중요 사업의 결정 및 임원의 임면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의 임직원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미국도 실무 관행상 공기업이나 국영기업체의 임직원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분 50%로도 하나의 기준에 불과할 뿐 그보다 낮은 지분의 경우에도 의율을 하고 있음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다. 우리 법의 경우에도 지분 50%는 하나의 기준에 불과할 뿐 실질적인 지배력 유무를 종합적으로 판단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단서로서 차별적 보조금이나 그 밖의 특혜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 사경제 주체와 동등한 경쟁관계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체의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보더라도 지분관계, 기업체의 성격, 임원의 임면권 유무, 차별적 보조금이나 기타 특혜 여부 등을 종합하여 실질적인 지배력 유무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우리 법의 운용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핵심 쟁점이 될 수 있고,⁹²⁾ 이 경우

91) OECD 부패방지협약이나 이에 대한 주석을 참조해 봐도 정당이나 정당 간부, 정당 후보자는 원래 그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92) 실제 2011년 인천지검에서 기소한 사건에서 중국 동방항공 한국지사장의 외국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바, 인천지법의 1심 판결

이에 관한 FCPA 사례 역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⁹³⁾

4. 직간접적으로

FCPA의 경우 앞서 살펴 본 바와 간접적으로 뇌물을 지급하는 모든 경우를 포섭하고 있는 반면 우리 법의 경우 간접적으로 뇌물을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명시적인 표현이 없다. 따라서 제3자에게 뇌물을 지급하는 경우 혹은 중개인을 통해 전달하는 경우 등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OECD의 현장 방문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의문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우리 측은 해석상 명백하기 때문에 명시적인 표현이 없더라도 처벌에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⁹⁴⁾ 국내 뇌물죄 관련 법규나 판례의 태도, 공범 이론 등을 감안하면 간접적으로 뇌물을 지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해석상의 의문을 없애기 위해서는 FCPA와 같이 “직간접적으로(directly or indirectly)”라는 표현이나 OECD 부패방지협약과 같이 “직접적으로 혹은 중개인을 통해서(whether directly or through intermediaries)”의 표현을 삽입하는 것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5. 예외 및 항변사유

문에 의하면 이에 대한 입증의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인천지방법원 2012. 2. 14. 선고 2011고합277, 294, 757 판결 참조.

93) 한편 우리 법에서는 공적 국제기구에 대한 정의가 없는 반면 FCPA의 경우 이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 15 U.S.C. §78dd-1(f).

94) PHASE 3 REPORT ON IMPLEMENTING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IN KOREA(October 2011), p. 11이하 참조

FCPA의 경우 1개의 예외(exception)과 2개의 적극적 항변사유(affirmative defenses)를 두고 있는 반면 우리 법은 제3조 제2항에 2개의 예외 사유를 두고 있다.

일단 FCPA의 예외사유 즉 일상적인 정부행위의 예외와 비슷한 예외사유를 우리 법도 두고 있다. 이는 OECD 부패방지협약 자체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예외이고 상당 수 회원국이 동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우리 법에는 도입되어 있다. 그 정확한 경위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으나 OECD 부패방지협약에 대한 주석에서 동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⁹⁵⁾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OECD가 2009년 채택한 권고에 따르면 사실상 회원국들로 하여금 동 예외를 더 이상 유지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다.⁹⁶⁾ 따라서 동 예외와 관련해서는 미국이나 우리나라 모두 같은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FCPA의 적극적 항변사유 중에 해당 국가의 성문법으로 적법한 경우의 항변은 우리 법에도 예외사유로 도입되어 있다. 다만 FCPA의 경우 외국공무원이 속한 국가의 성문 법령(the written laws and regulations)으로 적법함이 인정되어야 하지만 우리 법의 경우 반드시 성문법일 필요는 없어 보인다. 우리 법상으로는 외국공무원등이 속한 국가의 법령에 따라 그 지급이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경우라고만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FCPA의 또 다른 적극적 항변사유, 즉 합당한 실비 지출의

95) 실제 OECD의 현장방문(on-site visit)에서 우리 당국자가 같은 취지로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인다. PHASE 3 REPORT ON IMPLEMENTING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IN KOREA(October 2011), p. 15.

96)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Jon Jordan, 앞의 논문(주71), p. 881이하 참조.

항변은 우리 법에는 도입되어 있지 않다.

VI. 맺음말

이상에서 미국 연방법상의 FCPA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의 국제뇌물방지법과의 비교도 해 보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미국 사법당국이 FCPA를 공격적으로 의율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에서조차 많은 비판과 문제제기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⁹⁷⁾ 특히 적용 대상의 상당수가 외국 기업이라는 사실은 그 저의에 대해 이런 저런 의구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여기서 이에 대해 상론할 여유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일단 이러한 현실 속에서는 FCPA에 대한 올바른 소개나 정확한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이다. 자금의 이동에 국경이 없어진지 오래고, 기업이 전 세계를 무대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오늘날 FCPA의 적용가능성은 날로 증가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미 세계무대에서 활약하는 글로벌 기업을 다수 배출하였으며, 그 중 상당수는 이미 ADR이 유통되는 등 FCPA상 issuer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여기에 국제 사회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 특히 세계 경제활동에서 미국의 통신망, 전산망, 금융시스템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우리 기업이나 국민이 언제 미국 FCPA의 직

97) Lauren Giudice, 앞의 논문, p. 348 이하; Amy Deen Westbrook, 앞의 논문, p. 492 이하; Mike Koehler, 앞의 논문, p. 99 이하 등 다수. 특히 공격적인 의율이 FCPA 자체의 모호함과 불명확함에서 기인한다는 지적은 James R. Dorty, "TOWARD A REG. FCPA: A MODEST PROPOSAL FOR CHANGE IN ADMINISTERING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Business Lawyer(August, 2007), p. 1239 이하 참조. 이에 의하면 모호함과 불명확함이 FCPA의 DNA라고 일갈하고 있다.

접 적용 대상이 될 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다.⁹⁸⁾

더구나 이러한 미국의 드라이브는 OECD 회원국을 비롯하여 여타 선진국들로 하여금 전 세계적인 부패방지 운동에 동참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 OECD가 2009년 부패방지협약의 보다 철저한 집행을 촉구하는 권고안을 내놓거나 영국이 2010년 FCPA보다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받는 UK Bribery Act를 제정한 것은 이러한 움직임을 증명한다.⁹⁹⁾ 이러한 움직임은 결국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국제뇌물방지법 의율 건수의 증가를 초래할 것이고, 자연스럽게 FCPA를 비롯한 외국의 유사 입법의 해석이나 판례가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또한 국제상거래에서의 뇌물 사건은 각 나라에 관할이 중첩적으로 겹치는 경우가 많고, 사건 특성상 사법공조 및 범죄인 인도가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 있어 전 세계적인 공조의 활성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¹⁰⁰⁾

끝으로 부패방지에 대한 세계적인 움직임이 여러 법 영역 중에 지역성(locality)이 가장 강하다고 할 수 있는 형사법 분야에서도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적인 규범과 집행의 통일성을 실현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지는 매우 흥미로운 대목이며, 향후 많은 연구과제를 던져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98)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국내에서도 internal investigation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국내기업들은 소위 오너경영이 많아서인지는 몰라도 부패 사건이나 회계 부정이 생겼을 경우 기업 차원에서 이를 은폐하거나 수사에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으나, 미국에서는 기업이 오히려 로펌 등을 고용하여 적극적인 internal investigation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정당국과 협상을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FCPA와 관련해서는 internal investigation이 주요 practice가 되고 있다고 한다. Daniel J. Grimm, 앞의 논문, pp. 265-266.

99) Jon Jordan, 앞의 논문(주1), p. 871.

100) Barbara Crutchfield George & Kathleen A. Lacey, 앞의 논문, p. 524 이하 참조.

■ abstract ■

A STUDY ON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IN US

OH, TAEK RIM

The recent active and aggressive enforcement of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 by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and the Securities Exchange Commissioner has drawn substantial attention. Although FCPA has been promulgated in 1977 it had received little attention until recently. In recent years, the number of FCPA cases has increased dramatically and the amounts of the imposed fines have soared exponentially. Furthermore, as many of the target companies were non-U.S. companies, new light is being shed on the FCPA worldwide and the business community is increasingly paying sharp attention to the current trend. Korean companies also are not immune to the FCPA. Therefore, it is imperative to study the FCPA and such study will bring practical benefit that surpasses comparative legal research.

This Article first provides an overview of the first and second amendments to the FCPA. The FCPA, which was first enacted in 1977 in response to the Watergate Scandal and led to the signing and ratification of the OECD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the “OECD Convention”), has had significant impact on other countries. The process of change has laid the groundwork for aggressive enforcement by broadening and expanding the FCPA’s jurisdictional reach and the scope of persons and entities falling its purview. That is, the recent change in enforcement, without any amendment to the statute since 1998, has brought differences in the law itself, which further caused

groundbreaking changes in the overall business world. This Article, based on recent papers, data and other materials, discusses, among other things, the number of FCPA cases, amounts of fines levied, and foreign companies investigated for FCPA violation.

The anti-bribery and accounting provisions will be explained next. Based on the definition of “Covered Person” used in the anti-bribery provisions, this Article addresses the concepts of issuer, domestic concern and foreign nonresident. Especially, the jurisdictional reach and personal jurisdiction of each group of Covered Person will be explained in detail. Introduction of other elements of the anti-bribery provisions will follow, together with a more in-depth explanation of issues that have been controversial in the U.S., such as indirect bribery using intermediaries and the scope of government agencies (e.g., state owned entities) covered under the FCPA. The exceptions and affirmative defenses will be discussed as well, including the current trend of limiting the scope of these exceptions and defenses and comparison with the OECD Convention.

This Article also explains the accounting provisions in detail. Although the accounting provisions are not as well known as the anti-bribery provisions, they are much more stringent and have more far reaching implications for punishment than the anti-bribery provisions. In particular, the duty to maintain accurate books and records, proper internal control system and the standard required are explained.

This Article sets out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Korean law and the FCPA. Among other things, Korean law does not contain accounting provisions. In addition, this Article compares the two countries’ laws in terms of the scope of covered persons and foreign public officials, and exceptions and affirmative defenses. Comparative analysis would serve

as a helpful reference point in the interpretation or amendment of the relevant Korean law.

Finally, the Article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accurately understanding the FCPA. Despite criticism in the U.S. about aggressive enforcement of the FCPA, there is still a possibility that a Korean company or person would become the target of FCPA investigation. As such, it is crucial to have accurate knowledge about the FCPA. Moreover, in light of the fact that funds and business activities nowadays cross borders so frequently, the worldwide trend to jointly combat bribery will continue to increase. Therefore, this Article ends with an emphasis on the need to be prepared.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이재상, 형법총론(신정판), (1995)
- 법무부·전국경제인연합회, “문답식 국제상거래뇌물방지법 해설”, (1999. 2)
- 부패방지위원회, “반부패 국제협약 자료집”, (2003. 12.)
- 오규진, “OECD 뇌물방지협약과 한·미의 국내법적 수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2011).
- 오택림, “미국 연방법상 mail and wire fraud에 관한 연구”, 법조(Vol. 657), (2011. 6.)
- 윤충원, “미국 FCPA 반뇌물규정과 미국기업의 실무적 대응”, 무역학회지(제36권 제2호), (2011. 4.)

2. 외국문헌

- Amy Deen Westbrook, “ENTHUSIASTIC ENFORCEMENT, INFORMAL LEGISLATION: THE UNRULY EXPANSION OF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Georgia Law Review(Winter, 2011)
- Andrea Dahms & Nicolas Mitchell,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American Criminal Law Review(Spring, 2007)
- Barbara Crutchfield George & Kathleen A. Lacey, “INVESTIGATION OF HALLIBURTON CO./TSKJ’S NIGERIAN BUSINESS PRACTICES: MODEL FOR ANALYSIS OF THE CURRENT ANTI-CORRUPTION ENVIRONMENT ON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ENFORCEMENT”,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Winter, 2006)
- Colleen P. Mahoney et al, “THE UNITED STATES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ENFORCEMENT TRENDS”, PLI Corp. Law&Practice, Course Handbook Series No. 29082(2011)
- Daniel J. Grimm,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IN MERGER AND ACQUISITION TRANSACTIONS: SUCCESSOR LIABILITY AND ITS CONSEQUENCES”, NYU Journal of Law &

- Business (Fall, 2010)
- David Isaak, "FCPA COMPLIANCE - NAVIGATING THE MINEFIELD OF INTERMEDIARIES", *International Trade Law Journal* (Winter, 2008)
- Eric Engle, "I GET BY WITH A LITTLE HELP FROM MY FRIENDS? UNDERSTANDING THE U.K. ANTI-BRIBERY STATUTE, BY REFERENCE TO THE OECD CONVENTION AND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International Lawyer* (Winter, 2010)
- Ethan S. Burger & Mary S. Holland, "WHY THE PRIVATE SECTOR IS LIKELY TO LEAD THE NEXT STAGE IN THE GLOBAL FIGHT AGAINST CORRUPTION", *Fordham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30, 2006)
- Homer E. Moyer, Jr., John E. Davis & Michael L. Burton, "THE U.S.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ITS ORIGINS, DEVELOPMENT, IMPLEMENTATION, AND ISSUES TO WATCH", *American Bar Association Center for Continuing Legal Education National Institute* (March 21-22, 2002)
- James R. Dorty, "TOWARD A REG. FCPA: A MODEST PROPOSAL FOR CHANGE IN ADMINISTERING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Business Lawyer* (August, 2007)
- Jennifer Dawn Taylor, "AMBIGUITIES IN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UNNECESSARY COSTS OF FIGHTING CORRUPTION?", *Louisiana Law Review* (Summer, 2001)
- Joel M. Cohen, Michael P. Holland & Adam P. Wolf, "UNDER THE FCPA, WHO IS A FOREIGN OFFICIAL ANYWAY?", *Business Lawyer* (August, 2008)
- Jon Jordan, "RECENT DEVELOPMENTS IN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AND THE NEW UK BRIBERY ACT: A GLOBAL TREND TOWARDS GREATER ACCOUNTABILITY IN THE PREVENTION OF FOREIGN BRIBERY", *NYU Journal of Law & Business* (Spring, 2011)
- Jon Jordan, "THE OECD'S CALL FOR AN END TO 'CORROSIVE'

- FACILITATION PAYMENTS AND THE INTERNATIONAL FOCUS ON THE FACILITATION PAYMENTS EXCEPTION UNDER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University of Pennsylvania Journal of Business Law(Summer 2011)
- Justin F. Marceau, “A LITTLE LESS CONVERSATION, A LITTLE MORE ACTION: EVALUATING AND FORECASTING THE TREND OF MORE FREQUENT AND SEVERE PROSECUTIONS UNDER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ordham Journal of Corporate and Financial Law(2007)
- Lawrence J. Trautman & Kara Altenbaumer-Price,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MINEFIELD FOR DIRECTORS”, Virginia Law & Business Review(Spring, 2011)
- Marika Maris & Erika Singer,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American Criminal Law Review(Spring, 2006)
- Mike Koehler, “BIG, BOLD, AND BIZARRE: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ENTERS A NEW ERA”, University of Toledo Law Review(Fall, 2011)
- Paul V. Gerlach, “THE SEC’S ENFORCEMENT OF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American Bar Association Center for Continuing Legal Education National Institute(March 21-22, 2002)
- Peter W. Schroth, “THE UNITED STATES AND THE INTERNATIONAL BRIBERY CONVENTIONS”,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Fall, 2002)
- Robert C. Blume, J. Taylor McConkie. “NAVIGATING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THE INCREASING COST OF OVERSEAS BRIBERY”, Colorado Lawyer(August, 2007)
- Roger M. Witten, Kimberly A. Parker, Jay Holtmeier, Thomas J. Koffer, “PRESCRIPTIONS FOR COMPLIANCE WITH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IDENTIFYING BRIBERY RISKS AND IMPLEMENTING ANTI-BRIBERY CONTROLS IN PHARMACEUTICAL AND LIFE SCIENCES COMPANIES”, Business Lawyer(May, 2009)

- Stuart H. Deming, "THE FOREIGN PRACTICES ACT: THE ACCOUNTING AND RECORD-KEEPING PROVISIONS", American Bar Association Center for Continuing Legal Education National Institute (March 21-22, 2002)
- Thomas McSorley,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American Criminal Law Review (Spring, 2011)
- Tor Krever, "CURBING CORRUPTION? THE EFFICACY OF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North Carolin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Commercial Regulation (Fall, 2007)
- Lauren Giudice, "REGULATING CORRUPTION: ANALYZING UNCERTAINTY IN CURRENT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ENFORCEMENT", Boston University Law Review (January, 2011)
- Lucinda A. Low, Claudius O. Sokenu & Donald Zarin,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2008: Coping with Heightened Enforcement Risks", Practising Law Institute, 2008
- O'Melveny & Myers LLP,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Handbook" (Sixth Edition, 2009)
- Shearman & Sterling LLP, "FCPA Digest" (January 2011)